[모바일] 증권번호:

보험차익 과세 적용 신청 확인서(선택적과세)

■ 계약사항

증권(청약)번호		
보험 상품명	상품종류	
계약자 성명	생년월일	

■ 계약자 본인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범위*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. 또한 본인은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보험계약에 대하여 <u>'과세적용'</u> 계약으로 신청하였으며, 이 경우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보험차익(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총액을 뺀 금액)에 대하여 과세됨을 설명 들었으며, 동 보험계약에서 과세되는 보험차익과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세법에서 정한 금융소득(현재 1인당 2천만원)을 초과한 경우 최고 49.5%(현재)의 종합소득세(지방소득세 포함) 과세 위험과 소득 증대로 인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납입액 인상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.

- *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범위(단, 계약자가 개인이고 보험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 한함)
- -월적립식 저축성보험표 (2017.4.1 가입분 부터)
- ①납입기간이 5년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
- ②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
- ③계약자 1명당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연간 1,800만원(월평균 150만원)이하일 것
- -월적립식외 저축성보험표 (2017.4.1 가입분 부터)
- ①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내일 것 (단,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)
- -종신형 연금보험 (2013.2.15 가입분 부터)
- ①계약자=피보험자=수익자
- ②연금개시연령이 만55세 이상이고 연금을 개시 후 해지 불가
- ③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 수익 등을 지급 불가(연금개시전 후 중도인출 불가)
- ④연금지급방법이 종신형(개인형)이고 보증기급기간이 통계청장 고시하는 기대여명 이내일 것
- ⑤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[연금개시일현재 연금계좌 평가액/연금개시일 현재 기대여명 연수X3]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
- 보험계약 체결(가입)시점에 해당 보험계약을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와 상관없이, 과세계약으로 선택한 경우 향후 비과세계약으로의 재변경이 불가능함을 설명들었습니다.

상기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 및 확인하고 청약합니다.

계약자	성명:	서명(인)	전자서명
법정대리인	성명:	서명(인)	
(친권자 또는 후견인)	성명:	서명(인)	
<법정대리인(친권자) 1인이 서명한 경우>			서명(인)
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(친권자) 1인고			

년 ⁻	월	일
----------------	---	---